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7991 발의연월일: 2022. 10. 31.

발 의 자:김승남・김홍걸・최종윤

이원택 · 김민기 · 임종성

신정훈 · 소병훈 · 안호영

윤준병 · 김영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'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'이 만들어진 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함.

특히 2005년 코스타리카와 파푸아뉴기니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(COP)에서 '개발도상국 산림 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(Red 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, RED)'을 제안한 후 세계 각국은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, 산림탄소축적 증진활동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으며, 2015년 '바르샤바 REDD+ 프레임워크(Warsaw Framework for REDD+, WFR)'를 통해 REDD+ 방법론이 완성되었음.

이에 산림청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(NDC)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, 캄보디아, 라오스 등에서 REDD+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, 특히 캄보

디아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에서는 승용차 34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 준인 온실가스 65만tCO₂ 감축하며 배출권 발생에 성공함.

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산림청이 REDD+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산림청장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및 기업과 개인이 국외산림탄 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의 활성화를 위한 정의와 산림청장 등의 책무를 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.
- 나.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국 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·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부터 제8조까 지).
- 다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과 사업자에 대해 정의하고, 국외산림 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근거, 사업자의 관리·감독 의무, 국외산림탄 소축적증진 사업 표준 등을 신설함(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).
- 라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평가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, 전문인력 양성,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사업, 이를 담당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(안 제15조

부터 제19조까지).

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「파리협정」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 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관련 활동, 그리고 산림의 보전, 지속가능한 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"이란 「파리협정」 제5조에 따른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로 인한 배출의 감축 관련 활동, 그리고 산림의 보전,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 탄소 축적 증진 활동과 신규조림, 재조림을 말한다.
- 제3조(산림청장 등의 책무) ① 산림청장은 공공기관,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이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「파리협정」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④ 사업자는 개발도상국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

-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 업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 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 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
 - 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
 - 3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4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 - 5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술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 - 6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연구개발, 전문인력 양성, 재원조달, 교육·홍보 등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

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

-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(이하 "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 - 1. 국가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세부추진계획
 - 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국회 보고)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정부는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, 해당 연도

실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8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)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및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(이하 "실태조사등"라 한다)을 할 수있다.
 - 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국내 · 외 추진 현황
 - 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공공 · 민간 부문 투자 규모 및 동향
 - 3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및 모니터링 현황
 - 4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협력국의 제도 및 이행능력 현황
 - 5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기술개발 현황
 - 6.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의 방법·절차 및 제3항에 필요한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) 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 - 1. 산림전용 방지 활동
 - 2. 산림 황폐화 방지 활동
 - 3. 산림 보전 활동
 - 4.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활동
 - 5. 산림 탄소 축적 증진 활동
 - 6. 신규조림
 - 7. 재조림
 - 8.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
 - ②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- 제10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)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란 산림청장 외에 법 제9조에 따른 국외산림 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11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) ① 산림청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(이하 "산림청장등"이라 한다)은 국외산림탄소축 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 국가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,

시장 개척, 정보 제공, 사업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② 산림청장등은 사업자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전문인력 양성
- 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술의 개발 보급
- 3. 그 밖에 산림탄소증진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사업자의 관리·감독 의무) ①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및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아니하고, 산림 전용및 황폐화를 최소화하도록 관리·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·감독 의무를 준수하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- 제13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)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 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

영할 수 있다.
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발굴 및 이행
- 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
- 3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
- 4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관련 교육,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
- 5.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표준)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「파리협정」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(이하 "운영표준"이라한다)을 작성하여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② 운영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전용 방지 활동
 - 2.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황폐화 방지 활동
 - 3. 산림 보전 활동
 - 4.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활동
 - 5. 산림 탄소 축적 증진 활동

- 6. 신규조림
- 7. 재조림
- 8. 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15조(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·보급 촉진 등) ① 산림청장은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 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·연구소·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 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위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전문인력의 양성)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분야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
 - 2.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, 산업 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
- 제17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) ① 산림청장은 국외산

림탄소축적증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 그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)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강화
 - 2.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
 - 3.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
 - 4.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
 - 5. 그 밖에 산림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- 제19조(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) ① 사업자는 국외산림탄소 축적증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국외산림 탄소축적증진협회(이하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및 협회의 업무 등은 정 관으로 정하며,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20조(보고 및 검사)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산림청장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,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관 계 서류나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공 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 여야 한다.
- 제21조(청문) 산림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제22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

-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,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3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제1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임직원
 - 2.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 과 또는 단체의 임직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